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3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30.

발 의 자 : 양부남 · 강준현 · 김문수
김한규 · 민형배 · 박군택
박수현 · 서삼석 · 전진숙
정준호 · 정진욱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명칭, 대표자 성명, 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·과장 광고를 금지하고, 위반 시 제재는 시정명령이나 벌칙 등 사후적 조치에 국한되어 있음. 이러한 한계로 인해 불법 광고나 허위, 과장된 홍보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,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
대부업 광고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영상광고에 한해 자율심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, 이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.

이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방송, 신문, 인터넷,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

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, 대부업 광고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9조의4 신설, 제9조의5 신설 및 제21조제1항).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4부터 제9조의9까지를 각각 제9조의6부터 제9조의11까지로 하고, 제9조의4 및 제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4(광고의 자율심의)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 등과 관련한 광고(이하 “대부광고”라 한다)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광고가 제9조,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1. 「방송법」 제2조제1호의 방송 중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
2.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, 같은 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
3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(懸垂幕), 벽보, 전단(傳單) 및 교통시설·교통수단에 표시(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·음성·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)되

는 것

4. 전광판

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[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(Application)을 포함한다]

6. 그 밖에 매체의 성질,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

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협회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대부광고를 하려는

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협회에 대부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

제9조의5(자율심의기구 구성·운영 등) ①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과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심의에 적용하는 심의기준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후 대부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②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대부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협회는 대부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④ 제9조의4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.

⑤ 협회가 제9조의4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.

⑥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심의한 대부광고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9조제2항제4호 중 “제9조의9제1항”을 “제9조의11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제9조의9제3항을”을 “제9조의11제3항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“제9조의4제1항”을 “제9조의6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제9조의4제3항을”을 “제9조의6제3항을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0호 중 “제9조의5제1항”을 “제9조의7제1항”으로 한다.

9의2.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고를 새로 하거나 기존의 광고를 변경하려는 내용이 대부광고 자율심의를 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4(광고의 자율심의) ①</u> <u>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</u> <u>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</u> <u>용하여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</u> <u>등과 관련한 광고(이하 “대부</u> <u>광고”라 한다)를 하려는 경우</u> <u>미리 해당 광고가 제9조, 제9</u> <u>조의2 및 제9조의3에 위반되는</u> <u>지 여부에 관하여 제18조의2제</u> <u>1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</u> <u>개업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</u> <u>다.</u> 1. 「방송법」 제2조제1호의 <u>방송 중 텔레비전방송 및 라</u> <u>디오방송</u> 2.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<u>법률」 제2조제1호의 신문</u> <u>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</u> <u>간신문, 같은 조 제2호의 인</u> <u>터넷신문 및 「잡지 등 정기</u> <u>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</u> <u>률」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</u> 3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

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
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
옥외광고물 중 현수막(懸垂
幕), 벽보, 전단(傳單) 및 교
통시설·교통수단에 표시(교
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
영상·음성·음향 및 이들의
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
를 포함한다)되는 것

4. 전광판

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
넷 매체[이동통신단말장치에
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(A
pplication)을 포함한다]

6. 그 밖에 매체의 성질, 영향
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광고매체

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
자가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
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제1
항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
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
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
자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

<신 설>

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협회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대부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협회에 대부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

제9조의5(자율심의기구 구성·운영 등) ①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위를 위한 조직과 제9조의4제1항

	<u>에 따른 심의에 적용하는 심의 기준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후 대부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</u> <u>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대부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 <u>④ 협회는 대부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</u> <u>⑤ 제9조의4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.</u> <u>⑥ 협회가 제9조의4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.</u> <u>⑦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심의한 대부광고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
<u>제9조의4(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</u>	<u>제9조의6(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</u>

의 채권양수·추심 금지 등) (생략) <u>제9조의5</u>(고용 제한 등) (생략) <u>제9조의6</u>(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) (생략) <u>제9조의7</u>(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) (생략) <u>제9조의8</u>(차별금지) (생략) <u>제9조의9</u>(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) (생략) 제19조(벌칙) ① (생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제9조의9제1항</u>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5. <u>제9조의9제3항</u>을 위반하여	의 채권양수·추심 금지 등) (현행 제9조의4와 같음) <u>제9조의7</u>(고용 제한 등) (현행 제9조의5와 같음) <u>제9조의8</u>(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) (현행 제9조의6과 같음) <u>제9조의9</u>(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) (현행 제9조의7과 같음) <u>제9조의10</u>(차별금지) (현행 제9조의8과 같음) <u>제9조의11</u>(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) (현행 제9조의9와 같음) 제19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제9조의11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5. <u>제9조의11제3항</u>-----
---	---

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·전달·유통한 자	----- ----- -----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제9조의4제1항</u> 또는 제2항 을 위반하여 불법사금융업자 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 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 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불법 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 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	4. <u>제9조의6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5. <u>제9조의4제3항</u> 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 도한 자	5. <u>제9조의6제3항</u> ----- ----- -----
6. ~ 10. (생략)	6. ~ 10.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2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제21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
1. ~ 9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<u>제9조의5제1항</u> 또는 제2항 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 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	9의2. <u>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 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 고를 한 자</u>
10의2. ~ 12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	10. <u>제9조의7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
	10의2. ~ 12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